

작은 결혼식 운영을 위한 협약서

서울주택도시공사와 그린웨딩포럼은 결혼문화의 허례허식을 개선하고 작지만 뜻깊은 결혼문화를 만드는 '작은 결혼식'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서울주택도시공사 '작은 결혼식' 운영에 있어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약개요)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개요는 다음과 같다.

- (1) 협약사업: 서울주택도시공사 작은 결혼식 운영
- (2) 협약기간: 협약체결일 ~ 2020.12.31
- (3) 협약방식: 업무협력
- (4) 협약내용
 - ① 서울주택도시공사 작은 결혼식 예식 본식 기획·운영
 - ② 작고 뜻깊은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 협력
 - ③ 홍보 및 언론 노출 협력
 - ④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입주민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기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해 연간 2쌍 이상의 무료 결혼 진행

제3조 (역할분담) 양 기관은 제2조 협약내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성실히 이행한다.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원활히 이행토록 한다.

- (1) "서울주택도시공사"의 역할
 - ① 협약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제반사항 협조
 - ② 협약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
 - ③ 협약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홍보 및 언론 노출 협력
- (2) "그린웨딩포럼"의 역할
 - ① 협약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식 기획·운영, 안전사고 예방 등 실무 전반에 대한 책임
 -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가이드라인에 맞는 상담 및 예식 진행
 - 서울시 청년·신혼부부 임대주택 거주자를 우선으로 예식 진행
 - ② 작고 뜻깊은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
 - 다양하고 참신한 결혼식 기획 및 모델 제안
 - 작은 결혼 준비방법에 대한 강의 등 다방면의 협력
 - ③ 협약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홍보 및 언론 노출 협력
 - ④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
 -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입주민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기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해 연간 2쌍 이상의 무료 결혼 진행

제4조 (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) "서울주택도시공사"는 대강당, 구내식당 보수 공사 등으로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, "그린웨딩포럼"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.

제5조 (의무사항)

- (1) 양 기관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협약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요청에 의해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 협력한다.
- (2) "그린웨딩포럼"은 협약사업 운영실적 및 성과 등을 파악하며, "서울주택도시공사"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.

제6조 (협약기간)

- (1)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2020. 12. 31.까지로 한다.
- (2) 공간사용일은 매월 셋째 주 주말로 정하고, 공사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일정이 겹칠 경우를 대비하여 그린웨딩포럼은 공사 담당자에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3) 협약기간의 연장 및 단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협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7조 (협약의 해지)

- (1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통보 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① 쌍방 합의로 사업을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
 - ② 기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 - ③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
- (2) 위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.

제 8조 (양도제한 및 해석)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를 상호간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,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, 변경 또는 추가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한다.

제 9조 (협약의 성립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협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상호합의 하에 동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및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12월 일

서울주택도시공사
사장 김 세 용

그린웨딩포럼
대표 이 광 렬